

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제224호)

2023년 12월 12일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3. 11. 11.
- 나. 제출자 : 울주군수
- 다. 위원회 회부 : 2023. 11. 15.
- 라. 위원회 심사 : 2023. 11. 27.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미혜 총무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개정으로 장애인공무원 지원사업을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, 공무원 대상 후생복지사업의 지원근거와 대상사업을 명확히 정리하여 원활한 후생복지업무를 추진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-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삭제 (안 제2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, 안 제8조 및 제10조)
- 후생복지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원근거 마련(안 제7조)

- ‘울주군’ 과 ‘울주군의회’ 후생복지사업 통합 운영근거 마련(안 제9조)
- 자구 수정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조문 수정 등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최병수)

-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1조의2 (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)에 따라 장애인공무원 지원사업을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 대상 후생복지사업의 대상사업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,
- 상위법 개정으로 장애인공무원 지원사업을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조문인 제2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를 수정 및 삭제하고, 일반적 운영규정 조항인 제12조를 삭제하여 현행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- 또한, 안 제7조에서 후생복지사업의 대상사업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제1호에 따른 세부 지원사업으로는 구내식당, 휴게시설, 체력단련시설, 직장어린이집, 휴양시설 이용지원(1인당 20만원) 등이 있으며, 제8호 및 제9호에서 난임, 출산 직원 및 장례(상조 서비스) 지원 근거 조문을 마련하여 원활한 후생복지 업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5. 소수의견 : 없음